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5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오세희·고민정·김문수

이용선 • 전재수 • 서미화

추미애 • 이연희 • 김우영

허성무 · 정태호 · 정진욱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 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,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"수행하는 경우"를 "수행하거나 제40조의2(제 83조 및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"로 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0조의2(조합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) ① 조합은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와 제35조 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3조 전단 중 "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"을 "제36조, 제40조, 제40조의2, 제41조 및 제42조를"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"본다"를 "보고,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중 "제35조제1항제7

호"는 "제82조제1항제4호"로 본다"로 한다.

제94조 전단 중 "제42조까지의 규정을"을 "제40조까지, 제40조의2, 제41조 및 제42조를"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"제40조제1항 중"을 "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다른 법률의 적용 배	제11조의2(다른 법률의 적용 배
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제) ①
요건에 해당하는 조합, 사업조	
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	
1호,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	
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	
<u>수행하는 경우</u> 그 목적 달성을	수행하거나 제40조의2(제83조
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	및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
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	를 포함한다)에 따라 단체적
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 또는	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
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	
아니한다. 다만, 가격인상, 생산	
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	
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	
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	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0조의2(조합의 단체적 계약에
	관한 협의) ① 조합은 중소기
	업자를 제외한 자로서 대통령

제83조(준용 규정) 사업조합의 사 | 제83조(준용 규정) ------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・ 제3항, 제35조의2, 제35조의3.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 우 "조합"은 "사업조합"으로 본 다.

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 는 자와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<u>체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</u> 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 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 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 조합은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36조, 제40조, 제40조의2, 제4 1조 및 제42조를----. --보고,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 2제1항 중 "제35조제1항제7호" 제94조(준용 규정) 연합회의 사업 저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·제3 항, 제35조의2, 제35조의3, 제36 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40조제1항 중 "제35조제1항제7호"를 "제9 3조제1항제9호"로 보고, "조합"을 "연합회"로, "조합원"을 "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"으로 본다.

는 "제82조제1항제4호"로 본다.
제94조(준용 규정)
<u>제40</u> 조까지, 제40조의
<u>2, 제41조 및 제42조를</u>
<u>제40</u> 조제1항 및
제40조의2제1항 중
<u>.</u>